

울산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4-02호

## 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(울주군 위탁사업) 채용 공고

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(울주군 위탁사업)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일

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

# 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(울주군 위탁사업) 채용

## 1. 공모직위

- 기간제 근로자 1명

## 2. 계약기간

- 약 10개월(2024. 03. 01. ~ 2024. 12. 31.)

## 3. 채용분야

- 소상공인 교육·컨설팅 등 업무보조

※ [별첨] 직무기술서 참조

## 4. 근무지

-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(울산광역시 내)

## 5. 자격요건

가. 연령·성별·신체조건 제한 없음

나. 병역필 또는 면제자 : 현역은 임용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

다. 재단 「인사규정」제14조 제1항(채용제한)에 전부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※ [별지] 결격사유 참고

## 6. 우대사항
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가점 부여. 단, 해당 법률 제3항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

구 분	세 부 내 용
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세부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)	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.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## 7. 근로조건

급 여	복리후생	근무시간
매월 2,350,000원 (중식대 및 교통비 포함)	4대 보험, 복지포인트 등 내규에 의거 지급	주 5일 근무 (평일 8시간 : 9시 ~ 18시)

## 8.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

전 형	실시일자	평가기준	선발배수	합격자 발표일자	
서류전형 (온라인)	'24. 2. 2(금) ~ 2. 13(화) (14시까지)	결격사유 여부 판단	-	'24. 2. 15(목) 17시 이후	
면접전형 (오프라인)	'24. 2. 20(화) 14시 예정	아래의 항목을 면접위원이 평가 후 산술평균한 점수 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) 산정	1명 (예비합격자 2명 선정)	'24. 2. 21(수) 17시 이후	
		구 분			배 점
		기본자질 및 핵심가치			20점
		전문분야지식			30점
		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			20점
창의력·기타발전가능성	30점				
신원조회 이상 여부 및 최종합격자 발표				'24. 2. 26(월) 17시 이후	

## 9. 전형별 채용일정

구 분	세 부 일 정
공고기간	2024. 2. 1(목) ~ 2024. 2. 13(화)
접수일자	2024. 2. 2(금) ~ 2024. 2. 13(화), 14:00까지
서류전형	2024. 2. 14(수) 한
서류전형 발표	2024. 2. 15(목), 17시
면접일자	2024. 2. 20(화), 14시
신원조회 확인	2024. 2. 23(금) 한
합격자 발표	2024. 2. 26(월), 17시
출근일자	2024. 3. 4(월)

※ 세부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 10. 접수방법

- 재단 채용 홈페이지(recruit.incruit.com/ulsanshinbo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## 11. 제출서류

가.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마감일 기준(마감일 : 2024. 2. 13)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에 한함  
나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하여 사본 제출

제출서류 목록	유효기간	비고
1.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	-	공통
2. 경력증명서(경력사항 확인용)		
3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	3개월 이내	
4.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(자격요건 확인용)	-	
5.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		
6. 가족관계증명서(결격사유 확인용)	3개월 이내	
7. 국가건강검진 결과서(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)	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	

## 11.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

가.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 시행  
나. 최종합격자 발표 시 최종합격 예비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면 차순위자로 입사 기회 부여

## 12. 동점자 처리

-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가항목 “기본자질 및 핵심가치”, “전문분야지식”, “창의력, 기타 발전가능성”, “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” 순으로 고득점자로 결정

## 13. 주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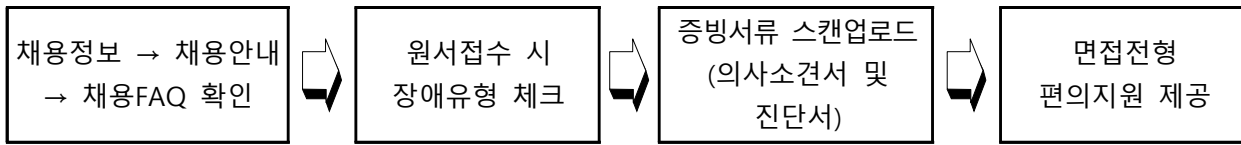
가.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력사항 등 최종 합격 시 증빙  
나. 허위사실 기재 및 채용비리 사실 확인 즉시 ‘탈락’ 처리 후, 민·형사상 조치 예정  
다. 「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가족관계, 학력 등 작성 금지

## 14. 지원자 권리 보호제도 안내

가.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

■ 제공범위 : 면접전형

■ 신청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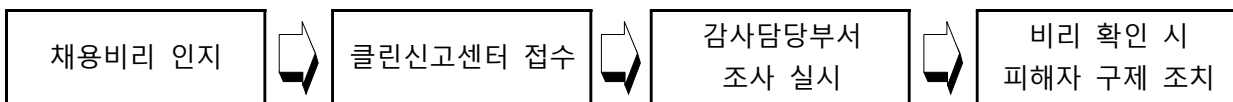


나. 이의 제기 절차

■ 근거 :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」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

■ 청구방법 : 재단 홈페이지 '클린신고센터' 로그인 후 작성 후 제출

■ 처리절차



■ 피해자 구제방법

피해자 특정 가능	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단계로 채용시 기회 부여
피해자 특정 불가	피해자 그룹 대상으로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절차 실시

## 15. 기타사항

가. 응시자의 부적합 사유 또는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나. 제출서류 중 서류전형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미준수자는 보완 요청없이 탈락될 수 있음

다. 제출서류가 허위내용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추후 입사 불가

라.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,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마. 전형별 결과는 기재한 휴대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(문자발송 등) 예정

바. 기타사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(담당자 추화랑 차장, 052-283-831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6.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

- 가. 당 재단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함.
- 나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
- 다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당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.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 재단이 부담
- 라. 당 재단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간 채용서류 보관하며,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

## 17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관련 안내사항

- 가. 면접시험 당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 영상 면접으로 응시 기회 부여  
※서류합격 발표 후 비대면 영상 면접 응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
- 나. 면접시험 지원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당일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를 실시하며, 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」의심 증상 있으면 응시 제한  
※37.5℃ 이상의 발열 및 기침·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

울 산 신 용 보 증 재 단

○ 결격사유

구 분	세 부 내 용
<p>재단 「인사규정」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 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li> <li>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</li> <li>5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</li> <li>6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</li> <li>7. 병역을 기피한 자</li> <li>8.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</li> <li>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9의 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</li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 <li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li> </ol>